

#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74,150,654	32,224,520
일반회계	870,336,137	26,110,084
특별회계	203,814,517	6,114,436
공기업특별회계	169,390,205	5,081,70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629,713	2,508,89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5,760,492	2,572,815
기타특별회계	34,424,312	1,032,729
주택사업특별회계	80,000	2,4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515,146	225,454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682,808	290,484
교통사업특별회계	12,798,622	383,959
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	3,000
기반시설특별회계	80,000	2,400
수질개선특별회계	3,463,736	103,912

제 2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1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6 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767,656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12년도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8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